

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
생산량 실적표

제출기업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	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
⑦ 투자시설			⑪ 투자종류		⑭ 생산량					
⑧ 연번	⑨ 시설명	⑩ 투자금액	⑫ 종류	⑬ 기술연번	⑮ 측정대상	⑯ 측정기간	⑰ 총생산량	⑱ 국가 전략기술 · 원천기술	⑲ 신성장 · 원천기술	⑳ 일반기술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실적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투자시설은 [별지 제8호의9서식]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⑦해당기술 제품 이외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가 ‘여’에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. 투자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기재합니다.
-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.

투자시설			투자종류		생산량					
연번	시설명	투자금액	종류	기술 연번	측정 대상	측정기간	총 생산량	국가전략 기술	신성장 · 원천기술	일반기술
1	0000	0000	국가전략 기술	1.반도체 가.	웨이퍼	2022.4.1. ~ 2025.12.31.	000개	000개	000개	000개
2	0000	0000	국가전략 기술	1.반도체 나.	웨이퍼	2022.7.1. ~ 2025.12.31.	00개	00개	00개	00개

- “⑫종류”란은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.
- “⑬기술연번”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6 신성장 ·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시설에 해당하는 신성장 ·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기재합니다.
- “⑮측정대상”란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 ·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생산량의 측정 대상인 것을 기재합니다.
- “⑯측정기간”란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(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2년 4월 1일)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.
- “⑰총생산량”란, “⑱국가전략기술”란, “⑲신성장 · 원천기술”란, “⑳일반기술”란은 각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을 기재합니다. 측정대상이 고체류인 경우는 개수로, 액체류 또는 기체류인 경우는 부피 측정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가 담긴 용기의 개수의 측정단위로 작성합니다.